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89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 구자근·박준태·김선교

최수진 · 김성원 · 인요한

배준영 · 조지연 · 강명구

이만희 · 신동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 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려는 것임(안 제100조의1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의12제1항 중 "신청자"를 "신청자(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직 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0조의12(금융거래 정보에 대	제100조의12(금융거래 정보에 대
한 조회) ① 국세청장(지방국세	한 조회) ①
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	
서 같다)은 납세지 관할 세무	
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	
는 경정을 위하여 <u>신청자</u> 및	<u>신청자(제10</u>
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	0조의6제11항에 따라 직권 신
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	청에 동의한 사람을 포함한다)
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	
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	
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	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18호에	
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	
서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으로	
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	
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	
수 있으며, 해당 금융회사등의	
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	
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	
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	
야 한다.	

------.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